

2025년 농식품수출성장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공모형)

농식품 수출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대미 상호관세 상향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 지원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5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공모형)」 참여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9월 1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1 사업 개요

□ 신청자격

○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22년~'24년 중 1년 이상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필수

* 제외대상 : 수산·임산물 수출업체(단, 농식품 및 수·임산물 병행 수출 시 농식품에 한해 수출실적 인정 및 지원), 상호출자제한기업 등 【붙임 1, 2】 참조

□ 지원규모 : ○○개소 (예산 상황 및 모집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업 규모 및 농식품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 비율 및 배정한도 차등 적용

- 국고 지원비율 :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 지원내용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각종 사업메뉴(33개)중 자율선택

* 사업메뉴별 공통 정산기준은 [붙임3, 4] 자료 참고

구분	사업메뉴			
기반 조성 (15)	수출컨설팅	수출전문인력 양성	제품개발(기술도입)	
	포장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출원	해외인증등록	샘플통관운송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해외기업 신용조사	물류 효율화 비용	장기저장제 보급
마케팅강화 (12)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지원	항만, 공항 부대비용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홍보콘텐츠 제작	현지시장조사	개별식품박람회 참가	개별바이어 초청
	유통업체 판촉	온라인 판촉	미디어 홍보	소비자 체험홍보
현지화지원 (6)	마켓테스트	기획바이어 그룹 초청 및 생산현장 팸투어	온라인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법무·세무·회계 자문	통번역(수출용 자료)	상품설명회 및 세미나	
	수출공동브랜드 개발		주류마켓 및 온라인몰 신규 입점비	
지사화 사업(공유오피스 임차료, 임시직 고용 등)				

- **지원한도** : 아래 인정수출 기준 수출실적당 지원한도 배정
 - 수출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수출업체 추가 배정 인센티브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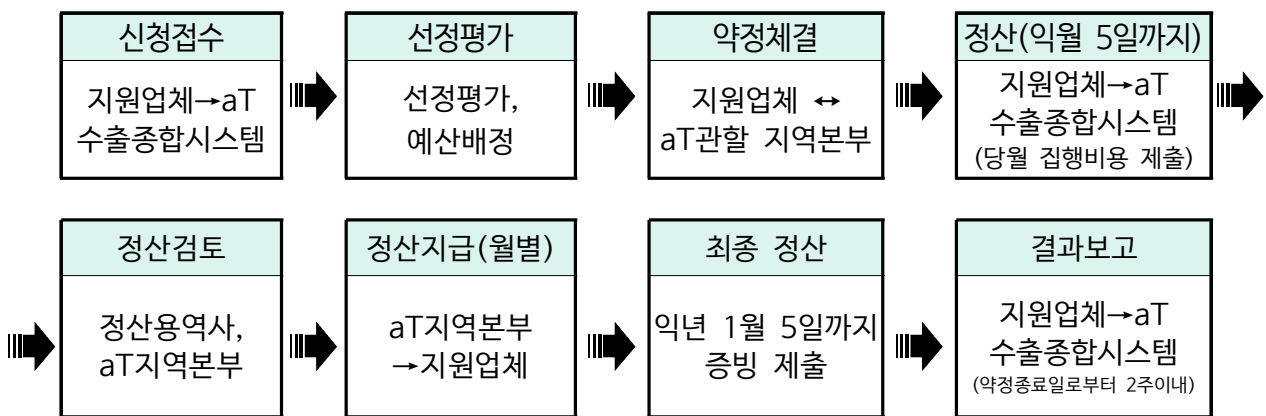
< 공모형 인정수출 기준 (배정모수) >

- 최근 3년 내('22~'24년) 한국무역통계진흥원(TmyDATA) 기준 농식품 수출실적(수출액)

* 가중평균 반영 : '24년 50% + '23년 30% + '22년 20%의 합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

* 단, 정산 인정기간 : 2025.4.5.~약정종료일(기간 내 사업추진 및 비용집행 완료)



2 모집 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5. 9 15.(월), 23:59 까지**
- **신청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http://global.at.or.kr>)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사업신청] → 참가기업 자가 역량진단 실시 → **2025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공모형)** 내 [사업신청] 버튼 클릭(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접수 불가) 우편, 퀵, 택배, 방문

-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을 위해 로그인 한 계정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 경우만 유효

[필수 제출서류(공통)]

- ①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 ② 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서약서 * 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 ③ 사업자등록증 * 사업신청 화면에서 신청서류 간소화 시스템(aT One Pass) 활용하여 자동 제출
 - ④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사업신청 화면에서 신청서류 간소화 시스템(aT One Pass) 활용하여 자동 제출
 -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별도 첨부)
 - ⑥ 온라인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공인인증서 필요)
- ☞ 바로가기 링크 (<https://tmydata.or.kr/mydata/send/index?t=2001&c=681&general=true>)
- 기동의 완료된 업체는 제출 불필요

[해당 시 필수 제출서류【붙임 5 참조】]

- ① 농식품 관련 인증서* 또는 농식품 관련 특허등록증 사본 1부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함)
 - ② (가점)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및 마케팅협의회 회원가입증명서(통합조직 및 마케팅협의회 발급)
- * 수출통합조직의 통합 또는 선도단계, 마케팅협의회 대상 품목 대상

3 선정 방식

□ 선정방법 : 계량 평가(60점) + 비계량 평가(40점) 합산 고득점순

- 공사 및 타 기관 지원사업 중복선정 제한기준에 따른 중복선정 여부 최종 확인 결과에 따라 선순위 업체 탈락 시 차순위 업체로 선정
- * 【붙임 5】 평가 기준 참조
- * 추가공모 목적에 의해 모집결과에 따라 선정방법, 예산 배정한도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결과발표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 확인 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 → 마이 페이지 → 사업 신청관리

< 주요 일정 >

유형	모집공고	신청	선정	한도배정	약정체결 및 사업개시
공모형	9.1	25.9.15(월) 23:59분	9월 중 (선정평가)	9월말	10월 중

- * 상기 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관할지사 및 문의처

관 할	연락처	관 할	연락처	관 할	연락처
서울경기	031-8060-6013 031-8060-6040	인 천	032-272-3001	강 원	033-920-1544
충 북	043-902-9531	대전세종충남	042-389-5019	전 북	063-904-5873
광주전남	062-940-7013	대구경북	053-218-4902	부산울산	051-947-1086
경 남	055-608-5826	제 주	064-900-8660	본사	061-931-0863 061-931-0864

붙임 1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공모형) 신청 유의사항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기업
* 단,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선정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대기업)
- 임산물, 수산물 수출업체
* 복수의 수출상품을 취급하고 농식품과 임산식품, 수산식품 혼재 시 지원 가능
- '24년도 패키지 참가업체 중 협약체결 후 참가기업의 사유로 협약 중도해지 또는 '24년도 패키지 운영 미비 2회 이상 적발로 차년도 신청 1년 제한벌칙 확정 업체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업 참가 제한 조치 업체

<중복지원 제한>

- **(공통)**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며, 위반 확인 시 환수 등 제재 조치
- 공모형 패키지와 중복지원 불가 대상인 aT 수출지원사업 간, 공모형 패키지와 타 기관 수출바우처 사업 간 중복 선정 불가
* 타 기관 수출바우처 사업 :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aT 수출지원사업 중 공모형 패키지 중복지원 불가 대상은 **【붙임 2】** 참조
- 공모형 패키지에서 해외인증등록 사업메뉴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인증등록사업과는 중복정산 불가
- 타 기관 수출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중복선정 불가
* 타 기관 수출바우처 사업 :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집행률 평가>

- 지원업체의 최종 예산집행률이 90% 미만일 경우, 차년도 패키지 선정시 기본배정 한도를 20% 감액 적용

붙임 2 (공모형 패키지) aT내 중복지원 제한대상

- 수출상품화
- 수출컨설팅(해외진출/현장코칭/FTA특혜관세)
- 글로벌브랜드육성
- 현지화지원사업
- 해외인증등록(aT)
- 개별바이어 초청
-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舊, 프런티어 인큐베이팅)
- (임산)글로벌선도조직육성
- (임산)수출컨설팅
- (임산)수출상품화지원
- (임산)우수임산물패키지지원
- 수산바우처

※ aT 푸드페어사업부가 제공하는 '국제식품박람회 한국관 또는 개별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의 경우, 해당 박람회 관련 비용은 농식품글로벌 성장패키지에서 정산 불가

붙임 3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사업메뉴

구분	사업메뉴	지원내용
기 반 조 성 (15)	수출컨설팅	수출역량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외부기관 컨설팅(수출실무, 수출전략, FTA특혜관세 활용지원 등)
	수출전문인력 양성	무역실무, 제품개발, 상품화 인허가 등 제품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반에 걸친 임직원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품개발(기술도입)	레시피 개발,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제품 효능·성분 분석 등을 위한 외부기관 활용 영역
	포장디자인 개발	외부위탁을 통한 제품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및 개발(디자인, 동판 또는 금형제작) - 수출용 제품명 표기 또는 수출용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각적 요소를 반영한 제품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및 개발(국문만 있는 경우 정산 불가) - 수출용 포장재 기능성 개선·개발
	지식재산권 출원	자사 제품 및 브랜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출원등록(국내·해외)
	해외인증등록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인증취득비·대행비)
	샘플통관운송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발송에 소요되는 운송비, 통관비,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수출국 현지 수입통관 규정에 맞는 제품등록비, 라벨링, 식품검사비용, 한시적 물류부담 완화 등 (검사기계 등 기자재 구매는 지원 제외)
	해외기업 신용조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 비용
	물류 효율화 비용	수출용 파렛트 구입비(목재 재질로서 열처리 방역 인증 필한 것에 한함) 등
	장기저장제 보급	수출상품의 신선도 유지 및 장기 유통을 위한 파렛트커버, 이산화염소 스틱, 전처리제 등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공동브랜드 적용(수출통합조직 및 마케팅협의회 인삼감치 캐릭터 등) 수출전용 포장상자, 포장차재 구입비 등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지원	프리미엄 수출 상품의 공동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
	항만, 공항 부대비용	해상 항만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서류발급비, 항만 인근 저온저장시설 이용료, THC 등) 및 APC(선별장) 입고 이후 유통지원 관련 비용, CFS 작업비, CA컨테이너 할증료 등 항공 공항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서류발급비, 공항 인근 저온저장시설 및 상용화주 터미널 이용료 등), APC(선별장) 입고 이후 유통지원 관련 비용 등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신설}	무역보험 미가입 수출기업이 직접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해외 채권회수 대행업체(추심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지원
마 케 팅 강 화 (12)	홍보콘텐츠 제작	자사제품 및 브랜드 해외 홍보 목적으로 외부위탁을 통한 콘텐츠 디자인 개발 및 영상물 제작
	현지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목적으로 추진하는 현지시장 유통소비실태조사 등의 해외 출장(항공료)
	개별식품박람회 참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개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용(임차비, 장치비 등 부스 운영비, 전시품 운송통관 등)
	개별바이어 초청	해외 신규 거래선 확보를 위한 유력 농식품 바이어 초청 지원(항공료)
	유통업체 판촉	해외 유통매장과 연계한 오프라인 판촉 행사(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시식행사비)
	온라인 판촉	해외 온라인몰과 연계한 판촉 행사(홍보비, 마케팅비, 입점수수료)
	미디어 홍보	자사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각종 매체활용 홍보(매스미디어, 온라인몰 홈페이지 등)
	소비자 체험홍보	자사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소비자 대상 체험(시음·시식) 홍보
	마켓테스트	해외진출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해외 바이어·소비자 대상 제품 선호도조사 등 실시
	기획바이어 그룹 초청 및 생산현장 팸투어	현지 바이어 초청 및 생산현장 팸투어시 발생하는 관련 제비용(항공, 숙박료, 차량비, 통역비 등)
현 지 화 지 원 (6)	온라인 수출상담회	웹 상품 카탈로그 제작, 통역비, 장소임차비 등
	시장개척단	수출국 현지바이어와의 세일즈 상담을 위한 제비용(항공료, 숙박료, 현지차량, 장소임차비, 통역비 등)
	법무·세무·회계 자문	수출목적의 해외 진출용 법무·세무·회계 분야 전문 컨설팅(해외법인설립, 해외현지 분쟁 해결지원 등)
	통번역(수출용 자료)	수출목적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전문 통번역업체를 통한 경우에 한함)
	상품설명회 및 세미나	현지 바이어 대상 수출상품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비용(장소임차, 행사기획, 통역, 전시 및 시식 등)
	수출공동브랜드 개발	신선농산물 통합조직의 수출공동브랜드 개발, 디자인 비용
주 류 마 케 팅 지 원	주류마켓 및 온라인몰 신규 입점비	수출국 유력 현지 대형유통매장 및 온라인몰 신규 입점 및 등록비용 등
	지사화 사업	수출국 현지시장개척 및 시장정착을 위한 제비용(공유 오피스 임차, 마케팅 전문인력 고용비 등)

* 부가가치세(VAT) 지원 제외

* 연도중 사업메뉴의 추가 및 변경 등 필요사항 발생시 “농식품 수출사업 심의위원회(사업)”에서 결정

붙임 4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공통 정산기준

1. 예산집행

-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의 합으로, 국고 대 자부담 구성 비율은 중소기업 9대 1, 중견기업 8대 2 로 함
- 참여기업은 공통 및 사업메뉴별 정산기준에 따라 총사업비 기준으로 선 집행 후 사후정산을 요청하여야 하며, 선금 지급은 불가
 - 정산신청 건 검토결과에 따라 정산승인 시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정산집행액을 참여기업에 지급함
- 사업메뉴 단위 지원한도 및 별도 의무부여 현황

구분	내용
사업메뉴 단위 지원한도	업체의 총사업비 기준 총 배정한도 내 별도 제한없음 * 단, 지사화 사업의 경우 정산인정기간 중 최대 4개월분, 월간 합계 집행한도(총사업비 기준) 200만원 내 지원 가능
사업메뉴별 최대 또는 최소 집행비율 제한	업체의 총사업비 기준 총 배정한도 내 별도 제한 없음 * (예시) 1개 사업메뉴에서 50% 초과 집행 불가 등의 기준없음
수출의무액 부여	① 해당 사업메뉴 : 유통업체 판촉, 온라인 판촉 ② 총사업비 기준 집행액 중 국고보조분의 150% 이상 수출실적 달성 의무 부여 * 수출신고필증 필수 제출
현지시장조사, 개별바이어 지원항목 및 한도	① 참가업체당 지원횟수 제한없음 ② 지원항목 : 항공료(왕복비용 확인 후 인정비용의 1/2에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지원) * 숙박비 지원 불가 ③ 1회당 최대 인원 : 2명으로 제한
그 외 사업메뉴 내 지원항목 및 지원항목 단위 지원한도	약정 체결 이후 최종 기준 공지 예정 * (예시) 포장디자인 개발 내 디자인 건별 국고지원기준 등
사업메뉴별 정산기준	약정 체결 이후 최종 기준 공지 예정

2. 정산신청

- 참여기업은 선택한 사업메뉴의 추진 시작 및 완료, 비용집행을 정산인정기간(~'25.12.31) 내 끝내고, 사업메뉴별 세부 정산기준에서 요구하는 적정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 정산신청을 완료해야 함
 - * 단, 해외인증등록은 예외적으로 인증서 발급일이 정산인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정산인정기간 전 등록 추진을 시작하였다더라도 정산신청 가능
 - * 단, 지식재산권 출원은 정산인정기간 내 착수 이후 출원·심사·등록 중 완료된 단계까지 한하여 정산신청 가능
(예 : 정산인정기간 내 착수하고 출원·심사까지 완료 시 출원·심사 비용만 정산신청 가능)
- 수시 정산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비용집행분(집행증빙 상 결제 일자 기준)은 다음달 5일까지 정산신청을 완료해야 함

3. 비용 인정범위

- 비용 인정범위는 지원사업 목적에 직접 관련된 실 집행금액에 한함
 - 수출실적 분류 상 농식품(농산·축산 포함) 대상 집행비용만 인정 가능
 - 임산·수산식품 대상 집행비용을 포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정산 불인정 혹은 감액 조치
 - 자산구매(유형·무형) 항목 불인정
 - * (자산성 항목으로 불인정하는 사례) 홈페이지 구축, 쇼핑몰 제작, 앱 개발, 기계류 구입 등
 - 부가가치세 정산 불가
 - 정산기준 상 인정 가능성이 불명확한 비용의 집행은 관할 aT 지역본부 담당자의 사전 확인 및 승인 필요

4. 정산신청 시 제출증빙

- 정산신청 시 사업메뉴별 정산기준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필수
 - ※ 사업메뉴별 정산기준은 약정 체결 이후 제공 예정
 - (기본 증빙유형) 정산신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 집행증빙 등
 - * 필요 시 결과물 실물 또는 결과물 제작 여부 확인가능한 전자파일 제출 포함
 - (정산 증빙자료 제출방법) 스캔 후 PDF 등의 전자문서로 시스템에 등록

- (인정가능한 집행방식)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
 - ※ 무통장입금 및 현금집행은 인정 불가
 - ※ 계좌이체 시 법인명의 계좌 송금이 원칙
 - ※ 세금계산서는 승인번호가 부여된 것, 국세청에서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조회되는 것만 인정 가능
 - ※ 정산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동의 필수
 - * [aT]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 [참여기업]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취소) 사실 발생 시 알림
 - ※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5. 해외집행

- 송금을 통한 비용집행 시 법인명의 계좌로의 송금이 원칙
 - 외환거래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경우 운영기관(aT) 사전 승인 필요
- 환율 적용기준
 - 송금증 상 환율이 명시된 경우 해당 환율 적용
 - 외환계좌를 통한 입금으로 송금증 상 환율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송금일 기준 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낼 때' 환율 적용
 - * 하나은행 사이트 접속 → 환율 → 환율/외화예금 금리 → 현재환율 → 고시회차(최초) 선택 → 조회 → 송금 보낼 때 기준 환율 적용
 - 환율증빙 없는 경우, 행사기간 평균 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낼 때' 환율 적용
 - * 사업기간(행사시작일~행사종료일) 중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내실 때 기간평균환율(단, 정산신청일은 협약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하나은행 사이트 접속 → 환율 → 환율/외화예금 금리 → 평균환율(기간평균, 최초고시) 검색 → 조회 → 송금 보낼 때 기준 환율 적용

6.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시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업체, 사업장 미보유 등 단순한 개인(전문가)과는 계약 불가

7. 중복지원 제한

-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며, 위반 확인 시 환수 등 제재조치
- 동일 증빙으로 복수의 패키지 사업메뉴에서 정산 불가
 - ※ 이 외의 중복제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공고문 상에서 별도 안내 예정

8. 기타사항

- (정산절차) 1차 원가정산기관 및 2차 aT 지역본부 검토 후 정산 승인여부 결정 및 정산집행액 지급
 - 운영기관(aT) 및 원가정산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정산 증빙자료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 매월 집행분에 대해 익월 5일까지 정산신청 시 동월 말일까지 정산 결과 확정 및 정산집행액 지급
 - * 정산 증빙 미비로 인한 보완 진행 시에는 예외로 함
- 정산 증빙서류는 국문 혹은 영문 표기 후 제출(증빙서류용 별도 번역비 지원 불가)

붙임 5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공모형) 선정평가 기준

□ (1차) 계량평가(60점)

○ 업체별 제출서류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실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점수				
수출 경쟁력	○ 수출금액(USD) * 최근 3년간('22~'24) 가중평균 - '24년 50% '23년 30% '22년 20%	20	초보				
			16만불 이상~ 20만불 미만	12만불 이상~ 16만불 미만	8만불 이상~ 12만불 미만	4만불 이상~ 8만불 미만	4만불 미만
			기본				
			44만불 이상~ 50만불 미만	38만불 이상~ 44만불 미만	32만불 이상~ 38만불 미만	26만불 이상~ 32만불 미만	20만불 이상~ 26만불 미만
			성장				
			4백만불 이상~ 5백만불 미만	3백만불 이상~ 4백만불 미만	2백만불 이상~ 3백만불 미만	1백만불 이상~ 2백만불 미만	50만불 이상~ 1백만불 미만
			심화				
			9백만불 이상~ 1천만불 미만	8백만불 이상~ 9백만불 미만	7백만불 이상~ 8백만불 미만	6백만불 이상~ 7백만불 미만	5백만불 이상~ 6백만불 미만
			고도화				
			1천4백만불 이상	1천3백만불 이상~ 1천4백만불 미만	1천2백만불 이상~ 1천3백만불 미만	1천1백만불 이상~ 1천2백만불 미만	1천만불 이상~ 1천1백만불 미만
20	18	16	14	12			
수출금액 증가율(%) * 최근 3개년('22~'24) 연평균 증가율 - 인정 가능한 자료가 없을 경우 본 지표의 최저점수 부여	20	20% 이상	15% 이상~ 20% 미만	10% 이상~ 15% 미만	5% 이상~ 10% 미만	5% 미만	
		20	16	12	8	4	
성장 가능성	○ 신청접수 결과, 자본 및 자산 또는 매출액 중 유효하게 확인 가능한 자료로 평가 - 둘 다 확인되는 경우, 유리한 쪽으로 적용 - 인정 가능한 자료가 없을 경우 본 지표의 최저점수 부여 ① '23년 자기자본비율(%) * 자본총계/자산총계*100 ② 매출액증가율(%) * (('23년 매출액)-('22년 매출액)/ '22년 매출액) * 100	10	50% 이상	30% 이상~ 5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10	8	6	4	2
제품역량	○ 농식품 관련 인증 및 특허 획득 여부	10	인증서 또는 특허등록증 1건당 5점(최대 10점) *인증서 또는 특허등록증은 최대 2개까지 입력 가능				
계 총점		60					
		-					

○ 인증 및 특허는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국내외 인증 및 특허를 기준으로 함

(국내) ISO, HACCP, GAP, GMP, 전통식품품질인증, 식품명인, 친환경농축산물(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가공식품 KS, 지리적 표시, 한국할랄, 농업벤처, 농공상융합업체, 6차 산업 인증(농촌융복합산업인증)

(해외) 미FDA, FSSC22000, BRC, SQF, IFS, Global GAP, China HACCP, 해외유기인증 (USDA NOP, EU Organic, 일본 JAS, 중국유기인증, IFOAM 등), HALAL(JAKIM, MUI, MUIS, IFANCA, HIPVT, WAREES 등), KOSHER, VEGAN, 러시아 EAC, 러시아 CU, Gluten-free, NON-GMO, 인도네시아 BPOM, 베트남 VFDA

○ 가점 및 감점지표

항목	점수	세부사항
가점	총5점	■ 수출통합조직 및 마케팅협의회 회원사(5점)
	총3점	■ '24년도 패키지 지원업체 중 수출실적 계량목표 달성업체(3점)
감점	총3점	■ '24년도 패키지 지원업체 중 12월 집행분 정산신청기한('25.1.5.) 내 정산신청 미완료(3점)

□ (2차) 비계량 평가(40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토대로 서면 평가

- 농식품 산업 관련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실시
- 평가결과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별 점수의 평균으로 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점수				
			수	우	미	양	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타당성 및 명확성 ○ 계획의 구체성, 실천가능성 ○ 수출품목의 국산원료 사용 등 정부 정책방향과의 적합성 ○ 신청예산의 적정성 	15	15	12	9	6	3
제품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독자적 경쟁력 ○ 제품의 수출확대 가능성 ○ 목표국 시장적합성 	5	5	4	3	2	1
수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 수출 경력 ○ 수출 전담인력(해외영업팀 등) 보유 ○ 해외 거래선 보유 등 수출 인프라 	10	10	8	6	4	2
성과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도전성, 적정성 및 측정가능 여부 등 	10	10	8	6	4	2

□ 최종 선정

- 할당예산 범위 내에서 계량 및 비계량평가 합산 결과 고득점순으로 선정
 - 예비업체 목록 운영 가능
 - 공사 및 타 기관 지원사업 중복선정 제한기준에 따른 중복선정 여부 최종 확인결과에 따라 선순위 업체 탈락 시 차순위 업체로 대체